

중국의 가격위법행위 고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지원팀장 / 중국법학박사 | 박 제 현

I. 시작하며

중국의 국무원은 2010년 12월 4일 가격법(價格法) 관련 집행을 강화하고자 「가격위법행위행정 처벌규정」(價格違法行為行政處罰規定)을 개정하여 과징금(과태료) 부과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반독점법(反壟斷法) 관련 세부규정인 「반가격독점규정」(反價格壟斷規定) 및 「반가격독점행정집행절차규정」(反價格壟斷行政執法程序規定)을 제정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1월에는 외국사업자인 까르푸(家乐福)와 월마트(沃尔玛)의 가격기만행위(價格欺詐行為)에 대하여 위법소득 몰수 및 위법소득의 5배 또는 법정 최고 한도인 50만 위안(元)까지의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 강화된 중국의 가격위법행위(價格違法行為)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가격위법행위 개관

중국의 가격 관련 위법행위는 크게 반독점법 상의 가격독점행위(價格壟斷行為)와 가격법(價格法) 상의 부당한 가격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내용(예를 들어, 가격담합의 경우는 양법 모두에 규정)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향후 가격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가격법에 의거 부당한 가격행위(구 가격독점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인 물가안정책의 일환

으로 2010년 12월 4일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价格违法行为行政处罚规定, 국무원령 제585호, 2010. 12. 4. 시행)을 개정하여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기존의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반독점법 시행 후 제기된 가격독점행위에 대한 가격법과의 중복 적용문제를 해소하고자 2010년 12월 29일 「반가격독점규정」(反价格垄断规定, 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제7호, 2010. 12. 29. 제정, 2011. 2. 1. 시행)을 제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가격법 관련 「가격독점행위제지함규정」(制止价格垄断行为暂行规定, 이하 “가격독점행위규정”이라 한다)은 2011년 2월 1일부터 폐지하였다.

Ⅲ. 가격위법행위의 종류

1. 가격법 관련

(1) 부당한 가격행위(不正当价格行为)

1) 가격담합(相互串通; 操纵市场价格)

이는 상호결탁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하여 상품가격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하게 함으로써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¹⁾ 여기서 ‘경영자(经营者)란, 상품의 생산·경영에 종사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타조직 및 개인을 의미한다.

2) 부당염매(低价倾销)

이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고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倾销)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교란하여 국가 이익 또는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²⁾ 다만, 법에 의거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재고상품 등을 가격 인하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이와 관련하여 「구 가격독점행위규정」 제4조에 의하면, 경영자간에 협의·결의 또는 협조 등의 결탁하는 방식을 통한 가격독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①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생산량 또는 공급량의 제한을 통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 ③ 입찰 또는 경매활동 중에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 ④ 기타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구 가격독점행위규정」 제7조는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의거 경쟁상대방을 배제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리베이트(回扣), 보조금(补贴), 증정(赠送) 등의 수단을 채택한 변형적인 가격 인하(变相降价)로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그 원가(自身)보다 낮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3) 가격선동(哄抬价格)

가격 인상정보(信息)를 날조·유포하거나 투기상인들이 악의적으로 사재기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격을 부추김으로써 상품가격의 급속·과다한 인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4) 가격기만행위(价格欺诈, 诱骗)

이는 허위 또는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가격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경영자를 기만하여 그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 가격차별(价格歧视)

이는 동등한 거래조건을 구비한 다른 경영자에 대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6) 변형적인 가격조정(变相提高或压低价格)

이는 등급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수단을 채택하여 상품을 판매·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변형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를 의미한다.

7) 폭리 도모(牟取暴利)

이는 법률이나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³⁾

8) 기타

이는 기타 법률·행정법규가 금지하는 부당한 가격행위를 의미하는데 「구 가격독점행위규정」 제5조가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⁴⁾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부지도가 등의 불이행(不执行政府指导价, 政府定价的行为)

중국 정부는 물가관리차원에서 국가가 가격행위(价格行为)⁵⁾를 규범하고, 가격의 합리적인 자원 배치기능을 통하여 시장가격의 안정과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가격법에 의

3) 이와 관련하여 「구 가격독점행위규정」 제6조는 “경영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의거 법률이나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4) 「구 가격독점행위규정」 제5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转售价格)를 금지하였다. 즉, “경영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상(经销商)에게 상품을 제공하면서 그가 재판매하는 가격(转售价格)을 제한(限定)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5) 가격행위(价格行为)는 상품가격(각종 유행상품과 무형자산의 가격)과 서비스 가격(각종 유상서비스의 요금)을 포함한다.

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3가지 종류(정부고시가, 정부지도가, 시장조절가)⁶⁾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시장조절가(市场调节价)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약 5% 정도로 추정)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지도가(政府指导价) 또는 정부고시가(政府定价)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균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부지도가 또는 정부고시가를 시행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통제대상으로는 ① 국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과의 관계가 중대한 극소수 상품가격 ② 자원이 희소하고 부족한 소수의 상품가격 ③ 자연독점경영의 상품가격 ④ 중요한 공용사업가격 ⑤ 중요한 공익성 서비스 가격이 해당된다.

한편, 정부지도가 또는 정부고시가는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회평균비용, 시장수급상황,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 및 사회수용능력에 의거하여 합리적인 가격 차이(구입과 판매, 도매상과 소매상, 지역 및 계절)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가격주관부문 주관 하에 공청회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와 경영자 및 유관 방면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필요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증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은 경영자가 정부지도가 및 정부고시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시정조치대상으로는 ① 정부지도가의 변동 폭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행위 ② 정부고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가격을 제정하는 행위 ③ 정부지도가나 정부고시가 범위 내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임의로 제정하는 행위 ④ 정부지도가나 정부고시가를 미리 또는 늦게 시행하는 행위 ⑤ 비용징수항목 또는 비용징수표준을 스스로 만들거나 결정하는 행위 ⑥ 비용징수항목의 분리, 비용의 중복 징수, 비용징수범위의 확대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변형적으로 비용징수표준을 인상하는 행위 ⑦ 정부가 취소를 명령한 비용징수항목에 대하여 계속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⑧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 또는 저당금 등의 형식을 통하여 변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⑨ 서비스를 강제 또는 변형적으로 강제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⑩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⑪ 정부지도가 및 정부고시가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3) 간여·긴급조치 불이행(不执行法定的干预措施, 紧急措施的行为)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현저하게 인상되거나 예상될 경우, 정부는 일부 가격에 대한 마진

6) '시장조절가(市场调节价)란, 경영자가 시장경쟁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을 의미하며(이 경우 경영자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정부지도가(政府指导价)란, 정부의 가격주관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법이 규정한 가격결정권한과 범위에 따라 기준가(基准价) 및 그 변동 폭(浮动幅度)을 제정하여 경영자를 지도하는 가격(이 경우 경영자는 정부지도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고시가(政府定价)란, 정부의 가격주관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가격결정권한과 범위에 따라 제정하는 가격(이 경우 경영자는 특정가격을 제외한 정부지도가 및 정부고시가에 속하는 상품범위 내에서 신상품의 시판가격을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율(差价率)·이윤율 또는 가격의 제한, 가격인상신고제도(提价申报制度) 및 가격조정 보고자료 보존제도(调价备案制度) 등의 개입조치(干预措施)를 채택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가격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가격과동 등의 이상상태가 출현하는 경우, 국무원은 전국 또는 지역범위의 임시 집중적 가격결정권한(临时集中定价权限)이나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가격을 동결하는 긴급조치(紧急措施)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에 경영자는 그 경영조건에 근거하여 건전한 내부 가격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경영 원본을 정확하게 기록·사정하여야 하며, 농간을 부려 남을 기만하는 행위(弄虚作假)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가 법정가격에 대한 간여조치 및 긴급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가격 인상의 미신고 또는 가격조정 보고자료를 보존(调价备案制度)하지 않는 행위 ② 규정한 가격차이율(差价率), 이윤율 폭을 초과한 행위 ③ 규정한 가격 제한이나 최저보호가격⁷⁾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④ 집중적인 가격결정권한(集中定价权限)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⑤ 가격동결조치(冻结价格措施)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⑥ 법이 정한 가격간여조치 및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가 있다.

(4) 가격표시규정(明码标价规定) 위반행위

경영자가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가격표시(明码标价), 등록된 상품의 품명, 산지, 규격, 등급, 가격계산단위(计价单位), 가격 또는 서비스 항목, 비용표준 등의 관련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표시가격 외에 상품의 할증판매 또는 명시하지 않는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가 가격표시규정(明码标价规定)을 위반할 경우는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가격을 표시(명시)하지 않는 행위 ② 규정한 내용 및 방식에 의하지 않고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③ 표시가격 외에 할증(加价)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 ④ 가격표시규정을 위반한 기타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2. 반독점법 관련⁸⁾

이는 반독점법이 금지하는 소위 '가격독점행위(价格垄断行为)'를 의미하는데, 이를 세분하면 가격 관련 독점협약,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행정독점행위로 나눌 수 있다.

7) 참고로 가격법 제29조는 양식 등 중요 농산품의 시장구매가가 지나치게 낮을 때는 보호가격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 내용은 "알기 쉬운 中国竞争法"(박재현, 2011. 1.,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행위(카르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행정독점행위 중 가격 관련 부분을 재구성하고 보완하였다.

(1) 가격 관련 독점협약(价格垄断协议)

이는 가격방면에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약(协议)·결정(决定) 또는 기타 협동행위(其他协同行为)를 의미한다. 그 중 기타 협동행위는 ① 경영자의 가격행위가 일치하는지 여부 ② 경영자 간의 의사연락 여부 ③ 관련 시장의 구조 및 시장 변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이러한 가격독점협약은 수평적 독점협약(横向垄断协议), 수직적 독점협약(纵向垄断协议,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단체의 독점협약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수평적 독점협약(横向垄断协议)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 간의 상품과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가격을 고정(固定) 또는 변경하는 독점협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상품의 가격수준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가격 변동 폭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③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나 할인 또는 기타 비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④ 약정한 가격을 제3자와의 거래의 기초로 사용하는 행위 ⑤ 가격을 계산하는 표준공식의 채택을 약정하는 행위 ⑥ 협약에 참가한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는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약정하는 행위 ⑦ 다른 방식을 통하여 우회적(变相)으로 가격을 고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⑧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이 인정하는 기타 가격독점협약으로 세분할 수 있다.

2) 수직적 독점협약(纵向垄断协议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이는 경영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독점협약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 ②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限定)하는 행위 ③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약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사업자단체의 독점협약(行业协会垄断协议)

이는 사업자단체(行业协会)가 동종 업계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실시하는 독점협약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가격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결정·통지 등을 하는 행위 ② 경영자를 조직하여 「반가격독점규정」이 금지하는 가격독점협약을 하는 행위 ③ 경영자를 조직하여 가격독점협약을 하거나 실행하는 기타 행위로 세분할 수 있다.

(2) 가격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濫用市場支配地位)

1) 독점적인 고가판매 및 저가구매(壟斷高價和不當低價收買)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고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저가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부당성 여부는 ① 판매가격 또는 구매가격이 다른 경영자가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동종 상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 ② 원가가 기본적으로 안정된 상황 하에서 정상 폭을 초과하여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구매가격을 인하하였는지 여부 ③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인상 폭이 원가 증가 폭보다 현저히 높거나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 인하 폭이 거래상대방의 원가 인하 폭보다 현저하게 높은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2) 약탈적인 가격설정행위(掠奪性定價; 不當賤賣)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부당염매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는 ①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유효기한이 곧 도래하는 상품 및 재고상품을 처리하기 위한 가격 인하 ② 채무 청산(淸償債務), 업종 전환(轉產), 휴업(歇業)으로 인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인하 ③ 신상품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판촉활동 ④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다른 이유를 충분히 증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 거래거절행위(拒絕交易行爲)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격 또는 지나치게 낮은 구매가격의 설정을 통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우회적(變相)으로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는 ① 거래상대방의 심각한 신용불량기록이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거래 안전에 비교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경영자로부터 동종 상품이나 대체상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경영자에게 상품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경우 ③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다른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4) 거래제한행위(限定交易; 獨家交易行爲)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할인 등의 수단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오로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경영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는 ① 상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② 브랜드(Brand) 이미지의 유지 보호 또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우 ③ 현저한 원가 인하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소비자가 그로 인

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경우 ④ 그 행위가 정당하다는 다른 이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5) 구속조건부거래행위(附条件的交易行为)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과정에서 가격 이외의 불합리한 비용을 부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6) 차별대우(差别性待遇)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건이 서로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가격에 있어서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가격 관련 행정독점행위(濫用行政权力排除, 限制竞争行为)

이는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의 위임에 따라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보유한 조직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① 외지(外地)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비용징수항목을 설정하는 행위 ② 외지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비용징수기준을 시행하는 행위 ③ 외지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가격을 규정하는 행위 ④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가격 또는 비용의 징수를 규정하는 기타 행위를 들 수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법률·법규의 위임에 따라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보유한 조직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영자로 하여금 각종 가격독점행위에 종사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행정기관은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가격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감면제도, 구제절차 등

경영자가 가격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무원 가격주관부문(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 직접 처리하지만,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등이나 반독점법의 가격독점행위의 경우에는 성(省)급 이상, 가격법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현(縣)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가격주관부문에 각각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결정 후 10근무일 내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행정적 제재조치

(1) 가격법을 위반할 경우

1) 위반행위별 시정조치

① 부당한 가격행위

경영자가 부당한 가격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정명령(责令改正) 또는 위법소득의 몰수조치(没收违法所得)를 부과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는 경고조치하거나 행위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행위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i) 부당염매, 가격차별행위의 경우는 10만~100만 위안 ii) 가격담합의 경우는 10만~100만 위안(단,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는 100만~500만 위안) iii) 가격선동의 경우는 5만~50만 위안(단,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는 50만~300만 위안) iv) 가격기만행위의 경우는 5만~50만 위안 v) 변형적인 가격조정의 경우는 2만~20만 위안이다.

아울러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휴업명령(责令停业整顿)을 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吊销营业执照)한다.

한편, 경영자가 개인인 경우는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ii)항과 제iii)항의 행위가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10만~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정부지도가 등의 불이행

경영자가 정부지도가·정부고시가·법정가격에 대한 간여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시정명령 또는 위법소득의 몰수조치를 부과하며, 아울러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휴업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위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i) 정부지도가·정부고시가 불이행(11종)의 경우는 5만~50만 위안(단,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는 50만~200만 위안) ii) 법정가격 간여·긴급조치 불이행(6종)의 경우는 10만~100만 위안(단, 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경우는 100만~500만 위안)이다.

한편, 경영자가 개인인 경우는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제ii)항의 행위가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10만~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가격표시규정 위반행위

경영자가 가격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또는 위법소득의 몰수조치를 부과하며 5,000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사업자단체(行业协会) 등의 부당한 가격행위

한편, 사업자단체 또는 기타 단위가 경영자를 조직하여 상호결탁을 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하거나 가격선동행위를 하는 경우는 경영자 처벌 외에 사업자단체 등에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등록관리기관에서 법에 의거 등록 및 허가증을 취소(撤销登记、吊销执照)할 수 있다.

2) 법위반사실의 공표(公告)

가격위법행위의 사안이 중대하면서도 경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⁹⁾에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은 시정조치 외에 당사자가 시정할 때까지 가격위법행위를 사업장에 공고하는 한편, 그 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자가 가격주관부문의 공고조치를 거절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공안기관에 처벌을 제청하거나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공고조치는 가격주관부문의 안전심의위원회(案件审理委员会)에서 집단토론(集体讨论)을 거쳐 결정한다.

그 중 사업장에 공고(经营场所公告)할 경우는 경영자 영업장소의 공고란(公告栏, 통로(通道), 창구(窗口), 계산대(柜台), 상품진열장(摊位)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고¹⁰⁾하여야 하며, 공고방식은 ① 공고문 게시(张贴公告书) ② 영업장소에서의 방송(在营业场地广播) ③ 기타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고문에는 ① 경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② 가격위법사실 ③ 가격행정처벌 결정내용(价格行政处罚决定) ④ 경영자가 시정을 거절한 사실 ⑤ 경영자가 시정 후 가격주관부문에 통지할 의무 ⑥ 공고조치한 가격주관부문의 명칭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며, 가격주관부문의 인장(印章) 등이 날인되어야 한다.

한편, 경영자 가격위법행위를 시정한 경우는 가격주관부문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격주관부문은 이를 심사한 후 확실히 시정된 경우는 공고 중지를, 시정되지 않은 경우는 시정할 때까지 계속하여 공고조치한다.

3) 휴업명령(责令停业整顿)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가격위법행위를 하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가격주관부문은 휴업명령을 할 수 있다. 그 중 휴업명령대상이 되는 가격위법행위의 유형으로는 ① 정부지도가 또는 정부고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② 법정가격에 대한 간여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③ 부당한 가격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9) 价格主管部门公告价格违法行为的规定(简称为公告规定, 2002. 10. 1. 시행) 제2조에 의하면 “경영자가 행한 가격위법행위의 사안이 중대하면서도 가격주관부문의 행정처벌 결정 후 ① 가격위법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② 법률·법규 등이 규정한 상태를 회복하지 않는 경우 ③ 기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다만, 영업장소에 2 이상의 경영자가 있는 경우는 다른 경영자가 소유, 임차(租賃), 사용하는 영업장소에는 공고할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란 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경우 ② 상습 위반(屢査屢犯)한 경우 ③ 증거를 위조, 수정(涂改), 이전, 소각하는 경우 ④ 가격위법행위와 관련한 자금 또는 상품을 이전(轉移)한 경우 ⑤ 기타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가격위법행위 경영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사전에 경영자에 대하여 진술(陈述), 변호(申辯) 또는 청문회 개최 요구(要求举行听证)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며, 가격주관부문의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집단토론을 통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휴업명령기한은 최장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영자는 휴업기간에 가격주관부문이 하달한 행정처벌결정서의 요구에 따라 정돈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경영자가 가격주관부문의 휴업처벌결정 수행을 저지(阻撓) 또는 방해하는 경우는 공안부문에 처벌을 제청하거나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경영자가 휴업처벌결정의 이행을 거절하고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 가격주관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휴업날짜는 법원의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경영자가 가격독점행위(독점협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경우는 위법행위의 중지명령과 위법소득의 몰수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전년도 매출액의 1~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독점협외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단체(行业协会)가 당해 업계의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외를 한 경우는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는 사업자단체등록관리기관에 해당 등록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경영자가 사업자단체의 독점협외에 참가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체의 처벌 외에 별도의 상응한 행정적 제재조치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다만, 행정독점에 대해서는 관련 상급기관이 직접 시정조치하며 가격주관부문은 이에 대한 처리를 건의만 할 수 있다. 즉, 상급기관이 시정을 명령하며 직접적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법에 의거 처분할 수 있다.

2. 행정처벌에 대한 감면제도 등

(1) 반독점법의 자진신고감면제도(宽恕制度; Leniency Program)

독점협외에 참여한 경영자가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에 독점협외 관련 정황을 주도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는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은 경영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과 제공하는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당해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

기서 '중요한 증거'란, 충분히 조사를 개시할 수 있거나 독점협의를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증거자료를 의미하며, 독점협약에 참여하는 경영자, 관련 상품의 범위, 협의의 내용 및 방식, 협의의 구체적인 실시정황 등을 포함한다.

감면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도적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으며, 둘째, 주도적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50% 이상, 기타 주도적인 신고자에 대해서는 50% 이하로 각각 그 처벌을 감경할 수 있다.

(2) 가격법의 행정처벌 가감제도 등

1) 감면제도

정부가가격주관부문은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때 감면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먼저 경영자가 행정처벌법(行政處罰法) 제27조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위법행위의 부작용(危害后果)을 주도적으로 제거 또는 경감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협박을 받아 위법행위를 한 경우 ③ 행정기관의 위법행위조사에 협력하여 공(功)을 세운 경우 ④ 기타 법에 의거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여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처벌을 면제한다.

2) 가중처벌제도

반면, 경영자가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중처벌(从重處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가격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경우 ② 상습위반(屢查屢犯)한 경우 ③ 증거를 위조, 수정(涂改), 이전, 소각하는 경우 ④ 가격위법행위와 관련한 자금 또는 상품을 이전(轉移)하는 경우 ⑤ 경영자가 소비자 또는 다른 경영자의 초과지불대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⑥ 마땅히 가중처벌하여야 하는 기타 가격위법행위를 들 수 있다.

3)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한편, 경영자가 납부기한을 경과해서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매일 해당 금액의 3%를, 위법소득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매일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加處罰款)을 각각 부과한다.

3. 행정처벌에 대한 불복절차

경영자가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이 처분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반독점법의 가격독점행위에 대해

서는 행정재심의(行政復議)를 신청→임의절차)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提起訴訟)할 수 있다.

반면, 가격법의 가격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재심을 신청(→ 필수적 불복절차)하고,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행정재심의는 그 처분결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¹¹⁾할 수 있으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바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행정처분의 결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책임 등

경영자가 실시한 가격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법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¹²⁾하여야 한다.

특히 경영자의 가격위법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소비자 또는 다른 경영자의 대금초과지불(多付价款)에 속한 경우는 그 초과지불대금에 대해서 경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명령을 하고, 초과지불한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찾기 곤란한 경우는 공고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경영자가 이를 저절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서도 반환이 안 될 경우는 정부의 가격주관부문이 몰수조치하고,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영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격위법행위가 시장질서를 심하게 교란시킴으로써 범죄를 구성한 경우나 피조사인 또는 정부의 가격주관부문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즉, 국가비밀이나 상업비밀의 누설, 직권 남용, 직무 소홀, 정실에 얽매인 부정행위)는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이 가능하며,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V. 맺는말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중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을 기존의 성장일변도의 정책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 등으로 전환하였고, 지난 전국인민대표대회(제11기 4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민생분야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방향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급등한 물가

11) 이 경우, 행정재심의는 60일 이내에 제결하여야 한다. 다만, 30일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12) 이 경우, 각종 반독점 민사안건은 중급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안건의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를 잡기 위한 인플레이션 억제 또는 물가지수 상승률 4% 이내 유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분야에 대한 카르텔이나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가격주관부문의 감독과 집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경우는 대폭 강화된 가격위법행위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위법소득을 몰수하는 한편, 전년도 매출액의 1~10%(반독점법 적용) 또는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나 최고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격법 적용)가 병과될 수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가격담합 등 가격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카르텔 예방수칙 등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불식시켜야 하며, 만약 가격주관부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경우는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